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관련 법규정집

2024.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목 차

I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
II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13
III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25
IV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정	38
1.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규정	39
2.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회기운영에 관한 규정	52
3.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공인 규정	54
4.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	59
5.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1
6.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공인 규정	65
7.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 규정	72
8. 지역상생발전기금 용자관리계정 운용 규정	76
9.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여비 지급 규정	82
10.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사무위탁 규정	84
11.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재무회계 규정	87
12.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및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115
13.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사무국 설치 및 정원 규정	118
14.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파견 공무원에 대한 파견보조비 등 지급 규정	122
15.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운용 및 관리 규정	125

I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2021. 1. 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5. 7. 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
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
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
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
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
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
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7. 24.>
-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 12. 31.>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용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용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용자에 대한 결산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12. 31.>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1.>
-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⑦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11. 5. 30.]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7. 24., 2019. 12. 31., 2021. 12. 7.>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 12.>

1.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1. 5. 30.]

[법률 제16856호(2019. 12. 31.)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전문개정 2011. 5. 30.]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채정법」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은 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3. 6. 9.>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칙 <제19430호, 2023. 6.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6까지 생략

④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④8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II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2017. 7. 26.>

[제목개정 2015. 12. 10.]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 가. 수입계획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2. 지출
 - 가. 지출계획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지출계획현액
 - 라. 지출액
 - 마. 다음 연도 이월액
 -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본조신설 2015. 12. 10.]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2. 성인지 기금의 집행 실적
3. 성인지 기금의 집행에 따른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본조신설 2015. 12. 1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15. 12. 10.]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2. 31.>

[전문개정 2015. 12. 10.]

제9조(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 삭제 <2010. 2. 8.>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3. 지방재정·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2조(전문기관) ① 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2021. 12. 31.>

② 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0. 2. 25., 2021. 12. 31.>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2020. 2. 25., 2021.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안분액 × (35/100)

②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 3. 12., 2020. 2. 25.>
[본조신설 2010. 2. 8.]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②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③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0. 2. 8.]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2. 25.>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2. 25.>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용자관리계정
2. 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2021. 12. 31.>

[본조신설 2010. 2. 8.]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0., 2020. 2. 25.>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본조신설 2010. 2. 8.]

제13조의4(용자관리계정의 재원) 용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0., 2020. 2. 25.>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용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본조신설 2010. 2. 8.]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0. 2. 25.]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 2. 8.>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8.>

[제목개정 2010. 2. 8.]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용자할 수 있으며, 용자를 하는 경우에는 용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용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이 용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용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용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 2. 8.]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목개정 2010. 2. 8.]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행정, 재정, 경제, 세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행정등 분야”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행정등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인력을 1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 행정등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5년 이상 또는 30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1. 시·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1. 시·군·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제1항제2호 후단의 추천권자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자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는 “시·도 및 시·군·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
 3. 사업의 투자 분담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 그 밖에 공동투자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부칙 <제33621호, 2023. 7.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전단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명 중 4명”을 “9명 중 3명”으로 한다.

별표 제138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Ⅲ.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2010. 5. 7. 제정] [2015. 3. 20. 일부개정] [2020. 7. 29. 일부개정] [2022. 4. 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5. 3. 20.>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7. 29.>

1.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2.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3.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5.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6.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7. 조합채의 발행
8.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9.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

10.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11.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12. 기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 사무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2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조합원의 기금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서울특별시는 기금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 균형발전 전문가 각 2인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제1항의 임기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의장 및 부의장직을 승계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6. 조합채 발행에 관한 사항

7.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합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조합회의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전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회의 개최 후 개최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9.>

⑥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시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각 기금 업무 담당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 담당 과장으로 기금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조합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3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지방재정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추천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그 조합장의 임기는 수탁기관의 장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4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금의 관리·운용 총칙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6조(기금의 계정 구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중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유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9.>

③ 조합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조합원 및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9.>

④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결산) ①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의결을 얻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9.>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5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발전기금 운용

제19조(재정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9.>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3. 용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4.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20조(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①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0. 7. 29.>

②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보조사업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배분방법 등과 제2항에 의한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용자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용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9.>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용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용자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용도
2. 법 제20조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재정지원계정으로의 전출

제22조(지방채 등 인수 대상) 법 제18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및 공사채(이하 “지방채 등”이라 한다)의 인수대상은 다음 각 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0. 7. 29.>

1. 문화·관광개발 사업
2. 농림·수산 개발사업
3. 산업·중소기업 육성 사업
4. 수송 및 교통 개발 사업
5. 기타 조합회의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지방채 등 인수 기준 등) ① 매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등 인수 규모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지방채 등 인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이자율을 감안하여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③ 지방채 인수 기준, 이자율, 인수절차,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9.]

제25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금) ① 조합원은 자신의 소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사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금에 예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도 예치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예치기간,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② 전환사업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2. 재정지원계정 및 용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전환사업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합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자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

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광역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기초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4조(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
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 제21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자
치단체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
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
할 수 있다.

④ 성과분석 및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사무위탁)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6항 및 법 제22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8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39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
한다.

부 칙(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IV.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정

1.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규정

[2010. 5. 7. 제정] [2010. 11. 26. 일부개정] [2015. 7. 16. 일부개정] [2020. 12. 21. 일부개정]
[2022. 7. 29.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회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조합회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해임 또는 위촉·해촉 한 때에는 이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20.12.21.>

제3조(의석배정) ①위원의 의석은 의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담당 국장이 임시로 정한다.

제4조(조합회의불참) ①위원 중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조합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회의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의장이 출석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 또는 심의·의결을 구할 수 있다. 단, 심의·의결 결과는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2020.12.21.>

제 2 장 의장과 부의장

제5조(의장·부의장 선출) 조합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장·부의장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다수결로 표결한다.

제 3 장 조합회의

제 1 절 조합회의의 개폐

제8조(개의) 조합회의는 의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그 개회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9조(조합회의에 관한 선포) ①조합회의의 개회·정회·휴회·폐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조합회의의 개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규약 제10조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의장이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 2 절 의사일정

제10조(의사일정의 작성) 의장은 개회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개회일 7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사일정의 변경) 위원의 동의로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제12조(의사일정의 조정)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조합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조합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 3 절 의안 및 동의

제13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조합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

거나 발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회기개시 14일전까지 조합을 경유하여 조합회의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안 배부) ①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이 제출·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전 위원에게 배부하고 조합회의에 부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전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동회의 의제성립) 이 규정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회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6조(수정동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적위원 1/4이상이 찬성하면 의제로 채택한다.

제17조(의안·동회의 철회) ①위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회의에서 의제된 후에는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조합장이 조합회의에서 의제가 된 조합장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변안동의) 변안동의를 의안을 발의한 위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안건이 조합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제19조(안전심의) ①조합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전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조합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관계자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전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④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전심의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제20조(再회부 및 의견청취) ①의장은 안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전을 제안자에게 회부하거나, 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조합회의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의안의 정리) 조합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조합 관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이송)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안을 조합장에게 이송 하여야 한다.

제 4 절 발 언

제23조(발언의 허가) ①위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원은 발언 중인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조합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7조(발언제한) ①의장은 원만한 조합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언회수 및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토론 의사표시) 의사일정에 올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하는 위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발언해야 한다.

제29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거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위원 2인 이상이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위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5 절 표 결

제31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2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3조(의사변경 금지) 위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4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의 방법으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제35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6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 6 절 회 의 록

제37조(회의록 작성) ①조합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 회의중지 ·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제반 보고사항
 7. 의안의 발의 · 제출 · 회부 · 환부 ·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부의안건과 그 내용
 9. 의사
 10.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서면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보충서
 13. 기타 조합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3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 · 부의장과 조합회의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②회의록은 조합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3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위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차기 조합회의일 전일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조합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위원 및 조합원에게 배부하고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 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 복사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조합회의의 내용은 공표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 7 절 서 기

제41조(서기의 요청) 의장은 조합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장에게 2명 이내의 서기 요원을 요청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합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조합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장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심사

제43조(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합회의에 지역상생발전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조합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조합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22. 7. 29.>

제44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5조(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사업별 심의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4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재심요구) 의장은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토록 할 수 있다.

제47조(결산의 심사) 조합회의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조합회의에 부의한다.

제 5 장 조합장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

제48조(조합장 등의 출석요구) ①조합회의는 그 의결로 조합장 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 또는 관계자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자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질문시간 24 시간 전까지 조합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조합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위원이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합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조합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조합장 등의 발언) 조합장 또는 관계자가 조합회의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질 서

제51조(조합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조합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조합회의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킁연
5. 조합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제5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3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일반인 및 단체가 방청을 신청할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은 조합회의가 비밀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단상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조합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껌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조합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6조(녹음·녹화 등) ①조합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은 조합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②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조합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조합에 가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합회의 개최통지

_____ 위원 귀하

20 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 (정기·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조합회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기 : 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

2. 장 소 :

3. 부의안건 :

4. 진행순서

5.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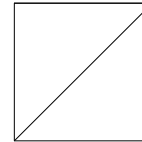
 년 월 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의장

(서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1. 표지(A4 용지)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의 안 의 결

(의 결 안 건 명)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 의안내용(A4용지)

(A4용지)

안 건 명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 -----
- -----
- -----

3. 참고사항

- -----
- -----

(A4용지)

안 건 명

(본 문)

2.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회기운영에 관한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회기운영에 관한 규정

[2010. 5. 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 회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및 회기) ①조합회의의 정기회의는 매년 5월 및 10월 중에 개최하고,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

②조합회의 임시회의의 회기는 각 3일 이내로 한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공인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공인 규정

[2010. 5. 7. 제정] [2015. 7.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공인은 조합회의인과 조합회의 의장인으로 구분한다.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과 모양 등) ①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쓴다.

제5조(인영의 색깔) 공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 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공인은 조합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각인) 조합회의인의 인영은 조합회의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조합회의 의장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8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15. 7. 16 개정]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공인은 조합회의 의장이 지정하는 조합직원이 관리한다.

제11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부 칙<2015.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조합에 가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 표】

공 인 의 규 격

구 분	규 격
1. 조합회의인	3.6cm
2. 조합회의의장인	2.7cm 이하

※ 위 길이는 한 변의 최대길이를 말함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서체규격	
폐 기		사용개시	
이 유		각인근거	
용 도			
보 관 책 임 자	직명 성명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인 영
	직명 성명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명 성명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경 유)

제 목 공인등록(재등록)신청
 공인폐기신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 공인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재
 등록 신청, 폐기신고를(을)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조합회의인 <input type="checkbox"/> 조합회의의장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 기 예 정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방 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 성명 : 직급 :
비 고		

발신기관의 장(인)

담당관 : 국장 : 조합장 :

협 조 :

시행 ○○과-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

(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인터넷주소

전화 /전송 /이메일

4.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2010. 5. 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수당) ①조합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조합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 되어 공휴일에 조합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2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여비) ①위원이 조합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0. 5. 7. 제정] [2022. 7.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의 정수) 감사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7. 2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②조합회의의 위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감사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결산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의 선임에 따른 조합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규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

⑤의장은 선임된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감사위원의 위촉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감사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자 및 조합회의의 위원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 감사위원) ①의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대표감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대표감사위원은 감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감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결산 <개정 2022. 7. 29.>

2. 계속비, 이월사업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조합재산의 결산

제8조(검사 협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대표감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감사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간의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감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조합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이후 조합회의 위원이 아닌 감사위원이 조합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감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 기준) 감사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된 일비지급 기준 외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구 분	액 수
일 비	20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제1호 다목에 상당하는 금액

【별지】

위 축 장 서 식

위 축 장

○ ○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의장 (인)

6.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공인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공인 규정

[2010. 5. 7. 제정] [2015. 7.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리,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 및 회계 관계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회계 관계자의 공인이라 함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기타 회계·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공인을 말한다.

③조합장의 공인 및 회계 관계자의 공인은 해당 부서에서 이를 비치한다.

제3조(특수공인) 조합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거 이미지형태로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과 모양 등) ①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과 같다. 다만, 조합장 직인을 전산처리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쓴다.

제5조(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 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의 신조개각은 해당 부서가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회계 관계자가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은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을 등록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에 의하여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회계 관계자의 경우에는 계정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9조(인영의 보존) ① 해당 부서는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15. 7. 16 개정]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11조(공인의 폐기) 공인의 개각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공인의 관리는 해당 부서가 한다. 다만, 회계 관계자는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한다.

제14조(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각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③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조합에 가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1】

공인의 크기(제4조 관련)

구 분	규 격
1. 조합장	3.0cm
2. 회계 관계자의 공인	2.0cm 이하

※ 위 길이는 한 변의 최대길이를 말함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경 유)

제 목 공인등록(재등록)신청

공인폐기신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공인규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폐기신고를(을)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재등록 및 폐기공인

구 분	공 인 명	규 격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사 유

※ 구분 란은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등으로 표기

발신기관의 장(인)

담당관 :

국장 :

조합장 :

협 조 :

시행 ○○과-문서번호-

(시행일자)/ 접수

(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인터넷주소

전화

/전송

/이메일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회계관계자의 공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램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사유	
		시·도 보 공 고	시보공고 제 호 (년 월 일) 도보공고 제 호 (년 월 일)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 록 일 (재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 기 방 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시·도 보 공 고	시보공고 제 호 (년 월 일) 도보공고 제 호 (년 월 일)
		비 고	
<p>※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p> <p>※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p>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			
공인종류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 유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관리부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분실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인 영 부

(년 2월 1일 현재)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공인명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인영란)

7.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 규정

[2010. 5. 7. 제정] [2012. 12. 14. 일부개정] [2014. 12. 16. 일부개정] [2015. 7. 16. 일부개정]
[2020. 5. 18. 일부개정] [2022.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3 제1호에 따른 출연금
2.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수입금
3. 시행령 제13조의3제3호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0.5.18.>

제3조(재정지원계정의 용도) 재정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3. 그 밖에 재정지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비 <개정 2020.5.18.>

제4조(재정지원 기준) ①제3조제1호에 따라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하는 금액은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잔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일부개정 2020.5.18.>

1. 광역자치단체 전년도 재정력 지수가 1 이상인 자치단체(이하 “불교부단체”)의 직전 5개년도 재정지원 금액 평균 배분 비율 중 최소값을 기본 배분율로 정하고, 해당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3%를 기본배분율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전국 인구수 대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수 비율을 기본배분율로 한다. <일부개정 2020.5.18.>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광역자치단체의 전년도 “재정력 역지수(1에서 재정력지수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합계에서 개별 광역자치단체 전년도 재정력 역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만, 불교부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0.5.18.>
3. 시·도별 배분액이 직전연도 대비 4%에서 8% 사이에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의 25%를, 8%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50%를 환수하고, 시·도별 배분액이 직전연도 대비 2%에서 4% 사이에서 감소한 경우 감소금액의 25%를, 4% 초과 감소분에 대해서는 50%를 보전한다.<개정 2012.12.14., 2022.12.16.>

4. 제3호까지 적용하고 난 후 남거나 부족한 재원은 제3호까지 적용한 배분 비율대로 추가 배분하거나 환수한다. 단, 시·도별 최종배분액이 제1호에 따른 기본배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본배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5.18., 2022.12.16.>

②시·도는 제1항에 따른 배분액 중 30%이상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배분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추정하여 배분하고 당해 회계연도말의 결과와 비교하여 다음 회계 연도 상반기에 정산한다. <개정 2014.12.16.>

④조합장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배분금액의 사용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다음회계년도 배분금액 산정시 반영하고,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 지원)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지원 금액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액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10%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 보조사업 등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일부는 규약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분석에 따른 인센티브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조합운영비 등) 제3조제3호의 각종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조합 사무실 임차비
2. 조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조합회의에서 조합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칙 <201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4. 개정>

제1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2013년 지역상생발전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16. 개정>

제1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7.16. 개정>

제1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2016년 지역상생발전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기준 적용기한) 제4조 재정지원 기준은 2022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지역상생발전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정지원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 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는 시·도별 배분액이 직전연도 대비 4%에서 8% 사이에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의 40%를, 8%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80%를 환수하고, 시·도별 배분액이 직전연도 대비 2%에서 4% 사이에서 감소한 경우 감소금액의 40%를, 4% 초과 감소분에 대해서는 80%를 보전한다.

8. 지역상생발전기금 용자관리계정 운용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용자관리계정 운용규정

[2014. 12. 16. 제정] [2016. 7. 15. 일부개정] [2017. 6. 22. 일부개정] [2020. 6. 30. 일부개정]
[2022. 7.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관리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자관리계정 자원) 용자관리계정의 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원
2. 시행령 제13조의4제3호에 따른 수입금
3. 시행령 제13조의4제4호에 따른 전입금

제3조(용자관리계정 용도) 용자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용도 <개정 2020.6.30.>
2. 법 제20조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재정지원계정으로의 전출

제4조(지방채 등 인수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및 공사채(이하 “지방채 등”이라 한다)의 인수대상은 다음 각 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0.6.30.>

1. 문화·관광개발 사업
2. 농림·수산 개발사업
3. 산업·중소기업 육성 사업
4. 수송 및 교통 개발 사업
5. 기타 조합회의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용자 규모) ① 매 회계연도 시도별 지방채 등 인수 규모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규정」 제4조제1항에 의거 시도별로 배분하는 지원기준으로 용자규모를 결정한다.

② 시도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용자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도 용자분을 재원이 필요한 시도 요청에 의해 조합장이 용자한다. 단, 복수의 시도가 용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발표한 예산대비 지방채무비율이 낮은 순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이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합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6.22, 개정 2020.6.30.>

③ 용자를 신청하지 않은 시도에게는 해당 시도의 용자분 이자수입 중 50%는 재정지원하고, 50%는 용자지원계정에 예치하며, 용자를 신청한 시도는 해당 시도 용자분 이자수입 100%를 용자지원계정에 예치한다. <개정 2017.6.22.>

제6조(용자조건) ① 용자금의 용자조건은 2년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연간 이자율은 용자해 갈 당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0.25%포인트를 가산한 이율로 하며, 이자 기산일은 용자금이 지급된 날(용자기관 은행계좌에 용자금을 입금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6.7.15.>

② 용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계산식을 따른다. <개정 2020.6.30.>

$\text{용자원금} \times \text{이자율} \times \text{용자일수} / 365$
--

제7조(용자 절차) 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시도에서는 조합장에게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 산정된 용자지원금을 붙임1 서식에 의거 신청 한다.

② 조합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용자하는 때에는 용자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용자금액, 용자이율 및 용자기간
2. 용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
3. 용자금의 중도환수에 관한 사항
4. 용자금의 미상환에 따른 연체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용자 원리금 상환) ① 용자받은 시도는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다른 지출보다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 용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연 4회로 하며 원리금 상환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7.15.>

③ 용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해당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 기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 이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④ 연체이후에 상환되는 금액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용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다만,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납입한다.

제9조(용자 원리금 조기상환) 용자받은 시도에서 원하는 경우 거치기간 중 또는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액 납부를 희망하는 날이 30일 전에 붙임2의 용자 원금 중도상환 신청서에 의하여 조합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발전기금업무로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7.29.]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융자관리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29.]

부 칙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지역상생발전기금 용자금 지급신청서

1. 신청금액 : 일금 원정(W)
2. 용자조건 :
3. 용자지원 지급일 :
4. 용자사유
5. 용자금 송금처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6. 신청기관 :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장

 도·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용자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 귀하

붙임2.

지역상생발전기금 용자 원금 조기상환신청서

1. 용자 원금 수령액 : 일금 원정(W)
2. 용자 원금 기상환액 : 일금 원정(W)
3. 용자 원금 상환잔액 : 일금 원정(W)
4. 조기상환 신청액 : 일금 원정(W)
5. 상환 잔액 : 일금 원정(W)
6. 신청액 납부 희망일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용자관리계정 운용규정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용자 원금의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장

도·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 귀하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예비 지급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여비 지급 규정

[2010. 5. 7. 제정] [2023. 1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 조합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조합장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다목을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위탁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위탁 규정

[2010. 5. 7 제정] [2022. 7.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탁) 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수탁기관”이란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무의 집행 또는 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

제3조(협약체결 등) ① 조합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사무를 처리할 조직 및 직원
5.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합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규약, 조합운영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조합은 위탁에 따른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현금 등의 계리) 수탁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은 수탁기관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계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의 지도, 감독) ① 제3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조합직원
으로 보며, 조합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조합직원은 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규약, 조합운영관련 규정 및 조합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의 해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1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재무회계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재무회계 규정

[2010. 5. 7. 제정] [2022. 7. 29. 일부개정] [2023. 3. 1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 수립 및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제2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조합의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③회계연도가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23.3.14.>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총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제4조(회계관직 지정) ①조합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 사무 수탁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직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3.3.14.>

1. 기금운용관 - 지역활력지원단장
2. 기금출납원 - 상생발전기금부장(지역상생발전기금), 소멸기금관리부장(지방소멸대응기금)

②기금운용관은 기금 수입·지출에 대한 출납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담당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따른 출납명령을 담당한다.

③회계관직의 직위에 있는 자가 휴가, 출장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합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계좌의 개설) ①조합장은 기금 수입금의 보관과 지출을 위해 조합회의 의결을 받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②조합장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1호 서식)을 금융기관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③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 ③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 ④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같이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⑤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조합회의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조합장은 조합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합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합규약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조합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조합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분야, 부분,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집행

제9조(집행품의)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14.>

제10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결산

제11조(결산) ①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의결을 얻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14.>

1. 수입

- 가. 수입계획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2. 지출

- 가. 지출계획액
- 나. 전연도 이월액
- 다. 지출계획현액
- 라. 지출액
- 마. 다음 연도 이월액
- 바. 불용액

제5장 수 입

제13조(징수결정) 기금운용관은 기금수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기금운용관은 과오지급과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반납자에게 반납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운용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9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징수보고서) 기금출납원은 분기별 징수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조합계좌의 세입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지 출

제18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 기금운용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별지 제11호 서식부터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14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기금출납원이 지급명령을 받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여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기금출납원이 지급명령을 받하려 할 때에는 지출의 과목별 및 채주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부담금, 보조금, 전출금
3. 법령 및 조합규약에 의한 의무적 경비
4. 사례금, 시상금
5. 조합회의 참석 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21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기금출납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15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송금통지) 조합장은 지급명령서(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송금통지서(별지 제1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의 확인) 기금운용관은 지급 후 지출결의서, 지급명령서, 금융기관 소정의 입출금전표 등을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는 것 외의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29.>

제25조(수탁기관의 수입·지출 처리방법) 기금 사무 수탁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회계처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제5장 수입과 제6장 지출 관련 서식은 수탁기관의 시스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부 칙 <201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1. 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	인 감
※ 명 판 날 인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20px;">직 인</div>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20px;">인 감</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직 성 명</p> <p style="text-align: right;">귀 하</p>	

〈기재요령〉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날인할 것

수입 징수계획서

(단위 : 천원)

과 목			수입액	재원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기 금 원 부

연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 원)

월일	과목		적 요	지출계획액 현액			
	편성목	통계목		당초	전연도 이 월	변경	합계

징 수 결 의 서

기금운용관	인	발 의	년 월 일	인
기금출납원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납입기한	년 월 일	인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년		결 정 액		
수입 과목	장			
	관			
	항			
	목			
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				

징 수 부

관 항 목

년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 ①	수 납 액 ②	과오납결정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①-(②-③)-④

반납결의서

증제 호							
기금출납원		기금운용관		연도		기금출납원	
				세 출 과 목			
발 의	인	조직		발 의	인
			정책				
			단위		지 급 명 령 부 기	인
원인행위부 기 재	인	세부				
			편성목		지 급 명 령 부 기 재	인
			통계목				
금 원(금 원)							
지출일자	인	고지서발행	인		
지급명령 번호	제 호	인	납부기한	인		
반납고지서 번호	제 호	인	납 부 일	인		
반 납 자	주소 성명 인						
주 무 과	반납사유 :						
취급자 인							

과오납금반환결의서

기금운용관	인	발	의	년	월	일	인
기금출납원	인	징	수	부	기	채	인
		과	오	납	금		인
		정	리	부	기	채	인
		과오납금정리부연번			번		인
연도			결 정 액				
과목	장		본	세	가	산	이
	관				금		자
	항						합
	목						계
금 원(금 원)							
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div>							
사 유							

과오납금정리부

								결재		기금출납원	기금운용관	
연번	부과정보	과오납 내역						통지일	과오납자	성명	지급계좌	반환방법
	과오납사유	과오납일	반환금액	과오납본세	과오납가산금	환부이자	총당금액	환부일		주민번호	수령인	
								지급일				

징 수 보 고 서

연도 월분

세목	년간목표	분기목표	징수 본분기분	징수 누계액	미수액	미수납자	과오납액	과오납 누계액

년 월 일

기금출납원 ○○○ 인

기금운용관 귀하

(일 반)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앞면)					
기금출납원		기금운용관		연도	담당자	기금출납원	
				세 출 과 목			
발 의	인	조 직		발 의	인
			정 책				
원인행위 부 기재	인	단 위		지출부기재	인
			세 부				
계 약	인	편성목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통계목				
검 수	인			지급명령 번호	제 호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뒷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앞면)							
기금출납원		기금운용관		연도		담당자		기금출납원	
				세출과목					
발 의	인	조 직		발의	인		
원인행위부 기 재	인	정 책		지출부기재	인		
			단 위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세 부		지급명령 번호	제 호			
			편성목						
			통계목						
개산금에 대한정산	개산액	년 월 일		₩	정산액	₩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 은행 계좌번호				
출장자	근무처 직 급 성 명		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용무					출장 지				

여비지급명세서

여행자			출장 목적	월 일	출장지			운임			일 /야	식비 (원)	숙박료 (원)	현 지 교통비 (원)	기타 (원)	계 (원)	청구액 및 수량액	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	직 급	성 명			출발	경유	도착	종별 (등급)	거리	요금								
							()											
							()											
							()											
							()											
							()											
							()											
							()											
							()											
							()											
							()											
							()											
							()											
							()											
							()											
							()											
							()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증 제 호		(앞면)							
기금출납원		기금운용관		연도		담당자		기금출납원	
				세출과목					
발의	인	조 직			발의	인	
원인행위부 기재	인	정 책			지출부 기재	인	
주문	인	단 위						
납부	인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검수	인	편성목			지급명령 번호	제 호		
물품출납부 기재	인	통계목						
금 원(금 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div>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성 명 인 </div>					위 금액을 영수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성 명 인 </div>				

구입물품명세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지출원인행위부

20 연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 원)

통계목	일자	원인번호	적요	채주	지출계획액현액 ①	지출원인 행위액 ②	잔액 (①-②)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지급명령발행부

지급명령			원인행위 번호	조직	과 목				채 주	지급명령 발행금액	적 요
월일	번호	구분			정 책	단위	세부	통계목			
일 반 누	계 납 계										
일 반 누	계 납 계										
일 반 누	계 납 계										

지 급 명 령 서

20 회계연도

	기금출납원	기금운용관
결재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호	채주	입금계좌		지급액	비고
			금 용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송금과 집합 지급명령을 표시.
2. 집합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지급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각각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송 금 통 지 서

송 금 통 지 서		
송금지급명령번호	금 액	과 목
통 신 란		
<p>위 금액을 ○○금고를 통하여 월 일로 별도 송금하였음을 통지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p> <p>○ ○ ○ 귀하</p>		

지출부(기금출납원용)

20 년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 원)

통계목	일자	명령 번호	적요	채주	지출 계획 현액 ①	지출액 ②	잔 액 (①-②)
			월계 누계				
			월계 누계				

12.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및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및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2011. 12. 7. 제정] [2020. 12. 21. 일부개정] [2022. 7.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 제 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분석 및 인센티브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개정 2022. 7. 29.>

제2조(성과분석의 대상)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성과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성과분석의 주체) 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성과분석지표에 근거하여 매년 자체 성과분석을 수행하고, 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총괄분석 하되 필요시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확인·보정 조치를 수행한다.

제4조(성과분석의 방법 및 결과의 활용) ① 기금성과분석은 기금운용계획, 기금 집행관리, 기금사업 성과 등에 대해 정성분석과 정량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지표별 배점은 조합회의에서 지정하는 기금 사용용도에 따라 조합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조합장이 성과분석대상 사업연도의 익년도 상반기 조합회의에 보고하고, 조합회의는 기금성과분석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기금성과분석 결과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인센티브 지급방법) 인센티브 지급은 기금성과분석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금, 또는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기금사업 성과창출에 기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교육기회 부여 등을 포함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시기) 지방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및 기금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은 성과분석대상 사업연도의 익년도 중에 한다.

제7조(인센티브 자원) 인센티브 지급재원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액에서 조합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10% 범위 내에서 재원을 편성할 수 있고, 해당연도에 인센티브 지급이 없을 경우 익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11.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국 설치 및 정원 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국 설치 및 정원 규정

[2013. 8. 8. 제정] [2015. 7. 16. 일부개정] [2019. 6. 26. 일부개정] [2022. 7.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무국의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의 범위) ① 조합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 한다.

② 사무국은 지방재정 업무 경험이 있는 조합원 소속 파견 공무원(이하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임명한다.

③ 파견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조합원과 협의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파견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16.>

④ 사무국 직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을 보조·보좌한다. <개정 2022. 7. 29.>

1. 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조직·정원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상생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9.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사업 설계 및 금융시장분석에 관한 사항
10. 조합사무 관련 조합원과의 협의·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직원의 지도·감독) 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 공무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원은 조합사무와 관련하여 조합 직원으로 보며 조합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조합 직원은 조합사무 수행에 있어 규약, 조합운영관련 규정 및 조합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파견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조합장은 인사기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해당 조합원인 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파견 공무원 성과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장이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파견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조합장은 그 파견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직원의 의무 등) ① 파견 공무원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파견 공무원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합업무를 해태 하거나, 정당한 조합장의 지휘에 불응할 때에는 조합회의에 보고하고 파견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 조치한 경우, 조합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과 협의하여 다른 조합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은 파견공무원 원소속기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인건비 상당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7.29.>

제5조(정원)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2013.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급별 정원표

(지역상생발전기금)

(인원 : 명)

직 급 별	인 원 수	비 고
총 계	4	
조합원 파견공무원	2	
5급(행정)	1	
6급(행정)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또는 조합원 파견공무원 6급(행정)	2	

(지방소멸대응기금)

(인원 : 명)

직 급 별	인 원 수	비 고
총 계	13	
조합원 파견공무원	9	
4급	1	
5급	4	
6급 이하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원	4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파견 공무원에 대한 파견보조비 등 지급규정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파견 공무원에 대한 파견보조비 등 지급규정

[2013. 8. 8 제정] [2022. 7.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처우개선 및 실비보상 차원에서 파견보조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보조비 등) ①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파견보조비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파견보조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2.7.29.>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파견보조금 등은 파견공무원에게 파견일로부터 복귀 전일까지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파견보조금 등의 지급 시기는 매월 1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익일로 한다.

부 칙 <2013.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 조합 파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파견 공무원 파견보조비 등

구 분	지급 기준(월)	
파견보조비	4급 이상	○ 800,000원
	5급 이하	○ 600,000원
귀향교통비	○ 파견자 원 소속기관의 지역에 따른 지급액 - 인천·경기 300,000원 - 대전·세종·강원·충남·충북 350,000원 - 대구·전북·경북 400,000원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450,000원 - 제주 500,000원	
주거안정비	○ 600,000원	

※ 주거안정비는 조합 근무를 위해 주거지를 조합 사무소 소재지 시·도 및 인근 시·도로 이전한 파견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15.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운용 및 관리 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운용 및 관리 규정

[2022. 7. 29. 제정] [2022. 8. 8. 일부개정] [2023. 7. 31. 일부개정] [2024. 3.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 제27조 부터 제36조까지 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 조합의 규약, 조합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 사무실 임차비
2. 조합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조합회의에서 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기금 투자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조합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기금 투자계획의 기본방향, 고려사항, 대상사업, 유의사항 등 작성요령을 설명한 ‘투자계획 안내서’와 ‘제출서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조합은 기금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 평가단 구성, 평가계획 수립, 기금 배분금액 확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다.

③ 조합에 제출이 완료된 기금 투자계획은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임의로 수정·보완해서는 안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투자계획을 수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만을 인정한다. <신설 2022. 8. 8.>

1. 지방자치단체가 기제출한 투자계획 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간 금액 조정
2. 광역자치단체가 기제출한 투자계획 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기제출한 투자계획 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교체

제5조(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협의·자문) ① 조합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가 투자계획에 대하여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조합 사무기구,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감액) ①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1. 기금 투자계획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부풀려 평가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게 된 경우
3.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을 지출하였거나 제출한 투자계획의 정당한 변경 없이 지출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사업연장 없이 기금 교부 2년 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이 저조한 경우
5. 기타 공정한 기금 운영에 반하는 사유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금의 감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기금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위반 사항과 기금의 감액 간에 비례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이월) 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기금의 집행이 곤란한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31.>

제8조(기금 투자계획의 진행상황 관리) ①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이 교부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 투자계획의 사업비 집행, 사업 진척도 등 진행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투자계획을 점검하여 부진 또는 부당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개선토록 권고하되, 만일 시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차후 기금 배분액 산정 시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금 투자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합회의 의결 후 기제출한 투자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변경사유, 타당성, 변경 계획 등이 포함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사업 간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 세부사항 변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거쳐 변경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② 변경 계획 제출 시 변경 계획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사업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계획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가 제출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등의 변경 신청에 대해 검토 후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8조의3(기금 집행잔액 등 사용) ① 자치단체별 당해 완료된 모든 기금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기제출 확정된 투자계획서 내 사업에 포함 또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한다.

② 사업추진 불가로 미집행된 사업비의 경우 지자체가 기제출 확정된 투자계획서 내 사업에 포함 또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2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와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 간 기회 균등을 위해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그 상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제21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2항의 당연직위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와 대리 참석자를 미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8.>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4조제2항의 평가단 위원 및 제9조제1항의 지방소멸대응기 금심위원에게는 「수당 지급기준」(별표)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안 준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위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2022.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평가위원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 수당지급 기준**

구 분	지급 기준	비 고
서면검토	○ 검토 건당 40,000원	
대면평가	○ 시간당 100,000원	
현장평가	○ 시간당 100,000원	
종합평가	○ 시간당 100,000원	
기타	○ 기타 회의수당은 1일에 200,000원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산출 근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적용